

비밀유지계약서

나노종합기술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제2조의 비밀정보를 보호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 또는 “을”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 개발사업 -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Lab to Fab 스케일업 기반 구축 과제(이하“목적 사업”)와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영업비밀, Idea, 기술정보 및 제반 자료를 의미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제공이 서면 외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공시 비밀사항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내용을 요약한 서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의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 ③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으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정한 비밀유지 및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보호)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2조 제1항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제3자를 위한 제품에의 적용, 광고, 판매촉진,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열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④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⑤ 본 조에 정한 비밀보호의무는 비밀정보 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4조(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제3조의 비밀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비밀정보가 공지·공용의 것이거나 본 계약 체결 후 공지·공용의 것이 되는 경우
 - 2. 비밀정보의 내용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인 경우
 - 3. 비밀정보가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지득한 것인 경우
 - 4. 본 계약의 위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내용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연구활동을 비롯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이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거절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한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취급)

- ① 비밀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비밀정보 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 정보를 제3자 또는 정보수령자의 피고용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이 요구 되어지는 쌍방의 피고용인은 예외로 한다.
- ③ 비밀정보 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승인 없이 목적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 중인 협상, 교섭, 계약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	각 기관의 비밀정보 취급 책임자	
	나노종합기술원(갑)	(을)
성명	설우석	
소속부서	나노소자기술실	
직위 / 직책	책임연구기술원 / 실장	
전 화	042-366-1605	
이메일	wssul@nnfc.re.kr	

제6조(비밀정보의 유지)

- ① 비밀정보 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유지하고,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 및 제공을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비밀정보 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한 주위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피고용인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접근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계약을 피고용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

“갑”과 “을”은 상대방에 제공하는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의 진위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사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공한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1개월 내에 제2조의 협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4. 7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5. 제9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방법은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의 제기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한다.

제11조(통지, 완전합의)

- ①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번지, 나노종합기술원
- ② 본 계약은 비밀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갑”과 “을”의 모든 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약 체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상의 합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나노융합기술서비스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본부장 : 임 성 규 (인)

“을”